

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소상공인·예비창업자·폐업(예정)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·예비창업자의 컨설팅,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「자영업닥터제」
참여 소상공인·예비창업자·폐업(예정)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. 모집개요

- (지원규모) 460명 / ※소상공인 390명, 예비창업자 20명, 폐업(예정)소상공인 50명
- (선정기준)
 - 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: 평가 기준표(붙임1,2)에 따라 고득점순 업체 선정
나. 원상복구지원 폐업(예정)소상공인 선착순 지원(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선정)
- (지원내용) 맞춤형 컨설팅, 시설개선 및 폐업소상공인 원상복구비 지원
 - 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: 컨설팅 최대 연3회 / 시설개선 업체별 최대 250만원
나. 원상복구비 지원 : 3.3㎡당 13만원 이내, 최대 200만원
- (지원대상)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
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

- **소상공인(390명)** :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(붙임3. 소상공인 기준 참조)
 - (상시근로자)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 - (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붙임3 참조)에 해당
- **예비창업자(20명)** :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(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선발) 대상자에 한해 평가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개별 안내

나. 원상복구 지원

- **폐업(예정)소상공인(50명)** :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(*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및 원상복구 시행일이 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원상복구 필수서류 증명가능 시 지원)
 - 『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 - 유상임대차계약(가족, 배우자 간 등 임대차 계약 제외)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 - 『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』(붙임4) 및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*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불가
- * 타 기관 사업정리 지원금 수혜자 중복지원 제외(중복확인 예정)

○ (지원제외 대상)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

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•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•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~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업종 (붙임4 참조) •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 •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(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(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)) 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---------	--

※ 사업신청 전 '4. 유의사항'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원상복구 지원 *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	구분	세부내용
지 원 제 외 사 항	자가건물 및 무상임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• 무상으로 임차계약을 작성한 경우 * 가족,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인 경우 지원 제외
	주거용도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	유사 사업수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(2024년 신청) 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	사업장 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
	제외업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) • 「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(붙임4)」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•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(국세청 홈텍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
2. 지원사항

○ (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)

- 컨설팅 지원: 분야별 전문가 구성, 컨설팅(최대 3회) 지원
- 시설개선 지원: 소요금액의 80% 최대 250만원 지원 (부가세 제외) /자부담 20%

구분		세부 지원내용	비고
컨설팅 지원	사전진단	· 대상업소 현장방문, 실태파악, 컨설팅 계획 수립	업체당 소요비용 이내 (최대 250만원) *소요비용:구입금액 (부가가치세 제외)×80% * 단위사업별 중복지원 가능
	컨설팅지원	· 경영기술, 브랜딩, 판로 마케팅, 점포개선 등 · 경영, 메뉴, 홍보,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· 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	
	연계지원	· 시설개선자금 및 현장견학(지역업체) 연계지원 등 ※ 현장견학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
시설 개선 지원	위생관리비 지원	· 소독청소용역 비용, 방역소독 비용, 위생관리기(살균·소독기·해충퇴치기) 비용 등	
	안전관리비 지원	· 소방위험물(가스, 전기 등)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· 위험물(석면 등) 철거·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	
	홍보(광고)비 지원	·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(사업장명 기재 필수) · 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	
	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	·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(신고(허가)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) · 내·외부 인테리어(도배, 전기조명, 샷시, 어닝 등)	
	POS 경비지원	· POS 기기·프로그램 지원(신규 구매 및 설치) 등 · 무인주문기(키오스크)·프로그램 지원(신규 구매 및 설치) 등	

○ (원상복구 지원)

- 점포철거·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*세부사항 참조
-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사업 안내(지원내용 및 신청방법)

구분	세부사항	비고
점포철거비 지원	·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00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제외) - 전용면적(3.3m ²)당 13만원 이내 -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(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) -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 지원(자력철거 지원불가)	지원제외사항 지원불가
법률자문 사업안내	· 내용 : 1:1 상담, 임대차,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	별도 신청
재창업교육 사업안내	· 방식 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재창업교육 지원	

*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안내 신청하신 경우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를 통해 사업 안내

3.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
① (신청개요)

○ (신청기간)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: 2024. 4. 26.(금) ~ 2024. 5. 31.(금) 18:00 (36일간)

나. 원상복구 지원: 2024. 4. 26.(금) ~ 자금 소진시까지
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페이지(dc.djbea.or.kr)

* 현장방문 시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자가 신청·접수 안내 지원

* 문의처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/ 유성구 가정북로 96(☎ 042-488-4809)

※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및 필수서류 사전준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온라인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: 1)접수 → 2)검토중 → 3)선정 또는 제외

(신청서 '수정 및 신청취소'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수상태가 '접수'일 경우에만 가능하오니,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○ (제출서류)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

구 분	제출서류
온라인 작성	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※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소지(대표자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)
필수서류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)	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1)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(사업주) 소상공인 증빙서류(해당 서류 제출) - 고용인원 1명 이상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) - 고용인원 없는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⑥ (사업주) 매출액 증빙서류(선택) -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2023년도) -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(2023년도) - 2024년도 신규창업자 (아래 서류 3종 모두) 가. 신용카드 매출자료 (국세청 홈택스) 나. 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내역 (국세청 홈택스) 다.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(국세청 홈택스) (조회기간 : 창업일로부터 2024. 4월까지 내역) - 전년도(1년)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×12로 계산 (조회기간 : 창업일로부터 2024. 4월까지 내역) ⑦ 국·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사업장 현황 사진(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사진 필수 제출) ⑨ 사업 추진계획서(지원필요성, 기대효과, 시설개선 필요분야 사진)
가점 등 (선택서류)	⑩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⑪ 확인서류 필수 제출 - 착한가격업소(지정서 사본, 사진, 발급공문 중 택1) - 장애인 소상공인 여성대표 소상공인 청년대표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증빙자료 제출

나. 원상복구 지원

*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구 분		제 출 서 류
사업 신청 서류	온라인 작성	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※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소지(대표자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)
	필수 서류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)	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1)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폐업사실증명원) ※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⑤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 -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3년도) 등 매출 증빙 -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⑥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(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) -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영업신고증 추가제출 ※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유의 사항 임대인·중개인 정보 모두 가림, / 임차인의 정보 중 성명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 ⑦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 /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-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제출 ⑧ 건축물대장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세움터(eais.go.kr)에서 발급가능 -점포만 인정(주거용 공간,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)
원상 복구 비용 청구	필수 서류 (선정 및 원상복구 후 제출)	① 폐업사실증명원 - 발급방법: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※ 구청 발급 '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' 불인정 ※ 종된사업장 '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(개발)'을 통해 폐업(폐쇄) 증빙시 지원 ② 공사내역서 :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 발급한 공사내역서 ※ 공급자(철거업체), 공급받는 자(신청인) 모두 확인되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(카드전표):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(카드전표) ※ 발행전 폐업한 경우,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※ 전자세금계산서상 승인번호, 공급·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, 업체명, 작성일자, 공급가액, 세액, 품목(내용) 모두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④ 이체확인증(카드대금 완납확인증) -전자세금계산서: 철거비용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철거업체 계좌로 이체한 이체확인증 ※ 포함내용:이체금액·일시, 수취인 성명(예금주)·은행명·계좌번호 ※ 현금거래 불인정 -카드전표: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(또는 이용대금명세서) ※ 신용카드: 카드사 발급, 체크카드: 카드전표로 갈음 ⑤ 통장사본: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※ 배우자(직계가족)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※ '압류방지통장(계좌)'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 ⑥ 점포철거 전·후 사진: 철거공사 전·후 사업장 내·외부 사진 ※ 타 사업장 입점한 경우,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

② (선정기준)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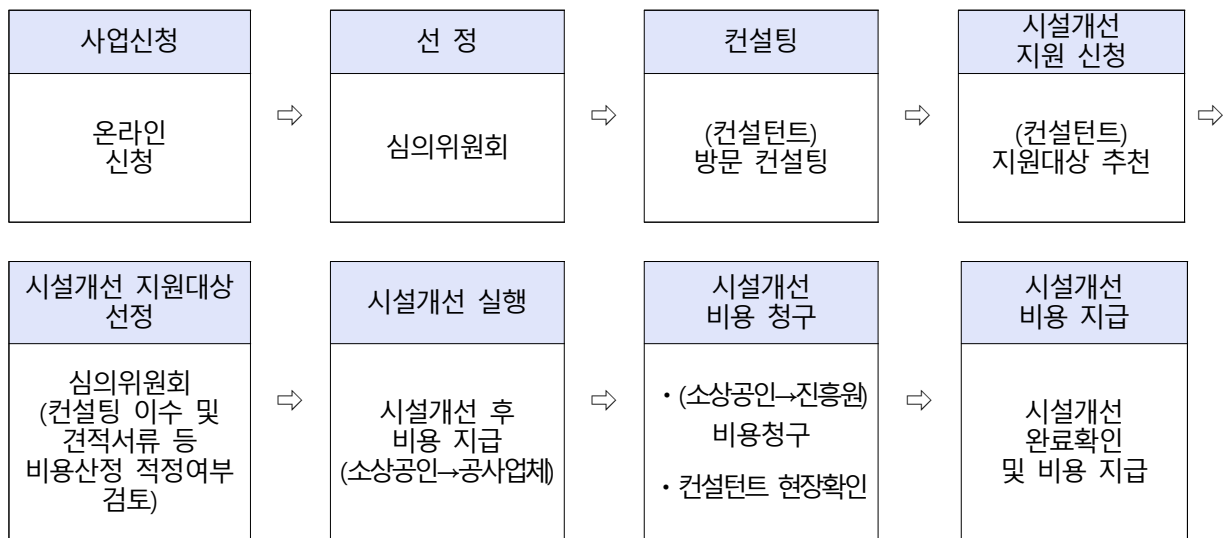
- 소상공인 : 선정평가표(붙임1)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* 동점일 경우 ① 임대여부 → ② 최저 매출액 순 → ③ 업 력 → ④ 추첨) 순에 의함
- 예비창업자 : 서류평가 및 대면심사로 선발(붙임2)

나. 원상복구 지원

- 폐업(예정)소상공인 : 선착순 선정(대상 여부 검토 후 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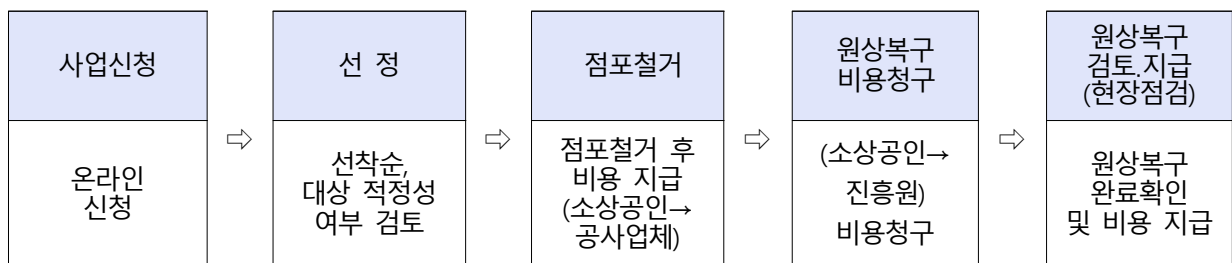
③ (지원절차)

가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



- * 시설개선 비용청구 시, 점포 환경개선 수행상태 확인 서류(전·후 사진 제출 등), 완료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서류 제출

나. 원상복구 지원



- * 원상복구 비용청구 시, 완료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서류 제출

4.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

- 시설개선지원은 한도액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며, 지원 금액은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
- 1인 1업체 신청가능(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,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)
- 무점포 사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가능
- 2021년 ~ 2023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(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)의 시설개선 수혜자 지원 제외
- 예비창업자 지원제외(컨설팅만 지원 가능). 단, 2024년 9월30일까지 창업 시 시설개선 지원 가능
- 컨설팅 2회 완료 업체 중 시설개선지원 대상 추천
 - 시설개선자금 지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
-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신청가능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(심의 제외)
-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1인만 신청 가능(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서 제출 필수)
- 필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
- 제출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한 경우 지원 불가(심의 제외)
 -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임대장소, 임대인, 임차인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함
 - 임차인은 대표자와 동일하고 임대장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
- 신고(허가)대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신고(허가)증명서 필수 제출
 - 제작업체의 경우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
-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
- TV,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
- 적격 심의 후 시설개선 내용 변경 불가 (변경 시 재심의)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
- 시공업체는 관내 소재한 시공(제작)업체로 선정하여야 함
 - 단, 불가피한 경우 심의 후 타지역업체 선정 가능여부 결정
- 시공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8개사 초과할 수 없음
 - 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, 미변경시 지원 불가함
-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비속(자제),방계(형제, 삼촌,조카 등)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를 선정 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원 불가. 지원 후 적발 시 환수 조치 함.
-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(제작)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신청 시 시설개선(공사, 구매 등)을 미리 진행 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 - 지원서 신청 → 적격심의 → 선정통보 이후에 시설개선 작업 진행
- 선정 및 승인 이전에 구매한 물품 또는 시공 시작한 공사는 지원 불가
- 선정 통보 받고 3개월이내 시설개선 완료보고 미제출 시 선정 무효 및 지원 취소 가능
- 선정 후 타사도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취소
- 실질적으로 휴·폐업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(전년도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 지원불가)
-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류 제출 지원 불가
-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,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미기재, 오기재, 제출서류 부실, 누락,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- 신청항목과 시설개선 대상 사진 불일치 및 신청서류와 신청자 정보의 불일치 지원 불가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,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 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될 수 있음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및 지원금 지급 불가
- 기타 심의하기 부적격한 경우 지원 불가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.

5. 기타 문의

- (문 의)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 (☎042-488-4809)
- (문의시간) 평일 09시 ~ 18시 (점심시간 12시 ~ 13시)

- 붙 임
1. 소상공인 선정평가표
 2. 예비창업자 선정평가표
 3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 4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. 끝.